

#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

(방문요양)



공정거래위원회  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| 계약당사자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이용자<br>(갑)              | 성 명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 급<br>(인정번호)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번호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경감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제공자<br>(을)              | 시설명  | 효다원재가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종류          | 방문요양 / 방문목욕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장  | 임 채 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031-215-4588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|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319, 스타천빌딩3층 303-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대리인<br>또는<br>보호자<br>(병) | 성 명  | (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 계           | ‘갑’ 의 (       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락처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**제1조(목적)**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**제2조(계약기간)**

- ① 계약기간은 20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부터 기간 정함 없이 한다.  
(단, 계약해지를 원할시 ‘갑’은 ‘을’에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 한다.)

-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**제3조(급여범위)**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‘갑’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**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**

-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  
② ‘갑’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| 구분              | 이용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용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용<br>시간<br>(1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월 <input type="checkbox"/> 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토 <input type="checkbox"/> 일 | 오전      시      분      ~<br>오후<br>오전      시      분      ~<br>오후 |
| 이용<br>시간<br>(2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월 <input type="checkbox"/> 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목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금 <input type="checkbox"/> 토 <input type="checkbox"/> 일 | 오전      시      분      ~<br>오후<br>오전      시      분<br>오후        |

- ※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
 ※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‘을’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  
 ③ ‘을’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.

| 구분   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비고 |
|----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|
| 이용시간1 |   |   |   |   |   |   |   |    |

- ④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  
 ⑤ 심야(22:00~06:00)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- ⑥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- ⑦ ‘을’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.

#### 제5조(계약자 의무)

- ①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월 이용료 납부
  - 2.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
 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 - 4.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
  - 2. 급여제공 중 ‘갑’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
  - 3. 급여제공시간에 ‘갑’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 - 4. 급여제공 중 알게 된 ‘갑’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 - 5. 이용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  - 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  - 7. 기타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의 요청에 협조
- ③ ‘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 - 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 - 3.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‘을’에게 통보
  - 4. ‘갑’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  - 5. 기타 ‘을’의 협조요청 이행

#### 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-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 - 2.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의 동의 없이 ‘을’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
4. 기타 ‘갑’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‘을’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 2. ‘갑’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 3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 4. ‘갑’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 5.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갑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 6. ‘갑’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#### 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‘갑’과 ‘병’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#### 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‘을’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0일안에 정산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. (문자안내포함)
- ③ ‘갑’은 매월 이용료를 ‘을’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15일까지 납부 한다. 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‘을’은 ‘갑’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#### 제9조(재계약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2.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
3.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

#### 4. 기타 ‘갑’ 과 ‘을’ 이 필요한 경우

##### 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‘갑’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### 제11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‘을’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‘갑’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‘을’ 은 즉시 ‘병’ 에게 통보한다.

##### 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‘갑’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‘을’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‘갑’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##### 제13조(기록 및 공개) ‘을’ 은 ‘갑’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##### 제14조(배상책임)

- ① ‘을’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  1.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‘을’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

'병' 대리인(보호자) (인)